

황보수정 선생님 「통합민법조문」 제3판  
 사용자를 위한 정오표② (2018-06-05)

p.168 누락된 제203조 제3항 추가

기존	<p><b>제203조(점유자의 상환청구권)</b></p> <p>①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.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.</p> <p>②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.</p>
수정	<p><b>제203조(점유자의 상환청구권)</b></p> <p>①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.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.</p> <p>②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.</p> <p>③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.</p>

p.356 누락된 제430조 조문 추가

기존	<p><b>제429조(보증채무의 범위)</b></p> <p>①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, 위약금,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.</p> <p>② 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.</p>
수정	<p><b>제429조(보증채무의 범위)</b></p> <p>①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, 위약금,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.</p> <p>② 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.</p> <p><b>제430조(목적, 형태상의 부종성)</b></p> <p>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.</p>

p.614 누락된 제827조 조문박스 추가

기존	<p><b>제826조의2(성년의제)</b>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.</p> <p>기출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대리권에 제한을 가할 수 있으나, 그 제한으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.(○) &lt;사시 2007&gt;</p>
수정	<p><b>제826조의2(성년의제)</b>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.</p> <p><b>제827조(부부 간의 가사대리권)</b></p> <p>①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.</p> <p>② 전항의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</p> <p>기출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대리권에 제한을 가할 수 있으나, 그 제한으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.(○) &lt;사시 2007&gt;</p>

p.634 누락된 제853조 조문추가

기존	<p><b>제852조(친생부인권의 소멸)</b> 자의 출생 후에 친생자(親生子)임을 승인한 자는 다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.</p> <p><b>제854조(사기, 강박으로 인한 승인의 취소)</b> 제852조의 승인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.</p>
수정	<p><b>제852조(친생부인권의 소멸)</b> 자의 출생 후에 친생자(親生子)임을 승인한 자는 다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.</p> <p><b>제853조 삭제 &lt;2005.3.31.&gt;</b></p> <p><b>제854조(사기, 강박으로 인한 승인의 취소)</b> 제852조의 승인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.</p>

p.685 누락된 제1002조 조문추가

기 준	<p><b>제1001조(대습상속)</b> 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같음하여 상속인이 된다. &lt;개정 2014.12.30.&gt;</p> <p><b>제1003조(배우자의 상속순위)</b></p> <p>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.</p> <p>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.</p>
수 정	<p><b>제1001조(대습상속)</b> 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같음하여 상속인이 된다. &lt;개정 2014.12.30.&gt;</p> <p><b>제1002조 삭제 &lt;1990.1.13.&gt;</b></p> <p><b>제1003조(배우자의 상속순위)</b></p> <p>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.</p> <p>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.</p>